

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1. 규정 개정 취지

- 대학원 불교학과 “전공/심화과정”을 “전공”으로 변경
 - ※ 학교법인 이사회(2025. 12. 12.) 논의)
-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개정(2024. 10. 22.)에 따른 자녀 양육 휴학 조건 변경
- 대학원위원회운영 문구 조정(상호 충돌)
- 학위기<별지서식 1~5> 학위기 표준 양식으로 변경

2. 개정 주요 내용(주요 골자)

- 대학원 불교학과 “전공/심화과정”을 “전공”으로 변경
 - 학칙 제10조의 3(전공/심화과정 변경) “전공/심화과정”을 “전공”으로 변경
 - 불교철학상담학 심화과정 재적생의 경과조치 마련
 - <별표 1> “대학원 학과 및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을 “대학원 학과·전공 입학정원”으로 변경
-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개정(2024. 10. 22.)에 따른 자녀 양육 휴학 조건 변경
 -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개정(2024. 10. 22.)으로 대학원 학칙 제18조(휴학)제4항 변경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개정 2024. 10. 22.>

1. 「병역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3.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 대학원위원회 운영 문구 조정
 - 대학원위원회 운영 문구 조정: 대학원 학칙 제51조제3항과 제53조제2항 상호 충돌로 문구 조정

3. 신구대조표 (예시)

현행	개정(안)
<p>제10조의 3(전공/심화과정 변경) ① 입학 후 전공/심화과정 변경신청은 동일 학과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수 후 2학기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제개편에 따른 전공/심화과정 변경은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 <개정 2024. 12. 17.></p> <p>② 전공/심화과정을 변경한 학생의 교과목 이수는 변경 후 전공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3. 1.>, <개정 2024. 12. 17.></p> <p>③ 전공/심화과정 변경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소속 학과·전공교수 또는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신설 2020. 3. 1.>, <개정 2024. 12. 17.></p> <p>제18조(휴학) ① 휴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휴학기간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기 중에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에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신청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7.></p> <p>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사과정 : 3개 학기 2. 박사과정 : 4개 학기 3. 위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과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파견기간은 2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학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의 3(전공 변경) ① 입학 후 <u>전공</u> 변경신청은 동일 학과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학기 이수 후 2학기 이내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제개편에 따른 <u>전공</u> 변경은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 <개정 2024. 12. 17.>, <개정 2026. 〇. 〇.></p> <p>② <u>전공</u>을 변경한 학생의 교과목 이수는 변경 후 전공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3. 1.>, <개정 2024. 12. 17.>, <개정 2026. 〇. 〇.></p> <p>③ <u>전공</u> 변경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소속 학과·전공교수 또는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신설 2020. 3. 1.>, <개정 2024. 12. 17.>, <개정 2026. 〇. 〇.></p> <p>제18조(휴학) ① 휴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휴학기간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기 중에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에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신청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7.></p> <p>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사과정 : 3개 학기 2. 박사과정 : 4개 학기 3. 위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과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파견기간은 2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 <u>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u>를 양육하기 위한 휴학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〇. 〇.></p>

현행	개정(안)
<p>제51조(구성 및 소집) ① 위원회 구성은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대학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불교학과 전임교수를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20. 3. 1.></p> <p>②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p> <p>③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3. 1.></p> <p>제52조(임기) 위원(당연직 위원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0. 3. 1.></p> <p>제53조(기능)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위과정·학과(부)·전공의 설치·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p>②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로 성립하고 심의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1조(구성 및 소집) ① 위원회 구성은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대학원장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불교학과 전임교수를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20. 3. 1.></p> <p>②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p> <p>③ <u>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신설 2020. 3. 1.>, <개정 2026. 0. 0.></p> <p>제52조(임기) 위원(당연직 위원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0. 3. 1.></p> <p>제53조(기능)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위과정·학과(부)·전공의 설치·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p>② <u><삭 제></u> <개정 2026. 0. 0.></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공/심화과정 명칭 변경) 불교철학상담학 심화과정은 불교철학상담학 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나. (전공/심화과정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이전에 불교철학상담학 심화과정에 재적중인 학생은 불교철학상담

현행

개정(안)

<별표 1> <개정 2024. 1. 12., 2024. 12. 17., 2025. 12. 12.>

대학원 학과 및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학과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불교학과	불교교학/ 불교철학상담학심화과정/ 불교미술학	10	5

<별표 2> <개정 2024. 1. 12., 2024. 12. 17., 2025. 12. 12.>

대학원 학과 및 전공/심화과정별 수여학위

학과	전공/심화과정	학위명	
		석사	박사
불교학과	불교교학/ 불교철학상담학심화과정	문학석사	철학박사
	불교미술학	불교미술 학석사	불교미술 학박사

학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이 개정 학칙 이전의 재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학칙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별표 1> <개정 2024. 1. 12., 2024. 12. 17., 2025. 12. 12.>, <개정 2026. ○. ○.>

대학원 학과·전공 입학정원

학과	전공	입학정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불교학과	불교교학 <u>불교철학상담학</u> 불교미술학	10	5

<별표 2> <개정 2024. 1. 12., 2024. 12. 17., 2025. 12. 12.>, <개정 2026. ○. ○.>

대학원 학과·전공 수여학위

학과	전공	학위명	
		석사	박사
불교학과	불교교학 <u>불교철학상담학</u>	문학석사	철학박사
	불교미술학	불교미술 학석사	불교미술 학박사

